

LG화학 협력회사 행동규범

Version 2.1



목차

개요	3
1. 인권 및 노동	4
2. 안전보건	6
3. 환경	8
4. 책임 있는 광물 관리	10
5. 준법 및 윤리경영	11
6. 경영시스템	12



주식회사 LG화학(이하, “LG화학”)은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화학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일환 중 하나로, 협력회사에 법률 규정의 철저한 준수 및 노동/인권, 환경,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의 운영 기준 수립 요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협력회사 행동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LG화학에 재화나 용역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한 모든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 노동, 인권, 환경, 안전, 세무, 경제 제재 및 수출입 통제 분야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협력회사의 모든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LG화학 또는 LG화학이 지정한 외부 감사자는 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협력회사를 방문하여 실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동규범에 대한 위반 사항이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LG화학과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기준을 참조하였습니다. 본 규범은 LG화학 관리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현지 법규와 내용이 상충될 시 현지 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합니다.



1. 인권 및 노동

협력회사는 현지 노동법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외 인권 노동 법령을 준수하고 앞으로도 관련 법령 제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자발적 근로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인신매매, 노예계약, 수감자 강제 노역 등의 강제노동은 금지됩니다.

강제노동에는 노동력을 얻기 위하여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의 행위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은닉, 채용, 전근시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기업 시설물에 대하여 비합리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이동할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해야 하며,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통지를 할 경우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및 인력 알선 업체, 하청업체)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과 등과 같은 신원 확인 문서를 보관, 파기, 은닉, 압수할 수 없습니다. 단, 현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여권, 신분증, 비자 서류 등 근로자의 신원 확인 문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모든 신원 확인 문서에 대해 소유하거나 통제하여야 합니다.

취업의 일환으로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1.2 아동 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모든 제조과정에서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적용가능한 모든 아동 노동 금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만 15세, 의무 교육 이수가 끝나는 연령, 현지 법규에서 정의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중에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초과/야간 근무 및 안전보건상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는 아동 노동 방지법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실습생이 있을 경우, 현지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시간 준수

현지 법규에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 및 예외적 특별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금지됩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4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매 급여일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징계 조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급여 내역서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급여 지급 기간마다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및 차별금지

근로자에 대한 폭력, 폭언, 성폭력, 성희롱,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강압, 공개적 모욕 등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발생 시 적용가능한 징계 방침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제공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혼인 여부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는 법상 요구되는 경우 외에 근로자에게 임신 테스트나 의료 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검진 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차별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종교 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고,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6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하고 현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근로자 대표가 경영진과 근무 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등 위협이나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2. 안전보건

협력회사는 안전 보건을 위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여 유효하게 갱신하여야 하며, 비상 대응 절차를 수립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청결한 근무 장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안전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1 산업 안전

근로자가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예: 화학물질 노출, 감전, 화재, 추락 등)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위험도를 저감하여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활동 이행, 안전 작업 절차 (잠금/차단 장치) 수립하고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도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개인보호구 제공과 이러한 위험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신 또는 수유기 여성 근로자는 유해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시 보고, 근로자 상황전파와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근로자 대상 대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상 훈련은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 중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장애물이 없는 비상대피로 확보, 복구 계획 등을 포함한 대응 절차 수립 및 이행을 통해 비상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2.3 산업 재해 및 질병 예방, 관리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근로자 신고 장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한 의료 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이행, 업무 복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체노동 및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또는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 및 스트레칭, 인력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규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재검, 공정 개선, 근로시간 단축, 직무 순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4 위험 노출 방지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노출되는 정도를 평가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파악된 위험요소들은 정도에 따라 적절한 공정 개선 및 기술·관리적 통제를 통해 제거 혹은 저감해야 합니다.

적절한 공정 개선 및 기술·관리적 통제로 충분한 수준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근로 시간 단축, 직무 순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5 신체 부담 업무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파악/평가하고,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직무 순환, 스트레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6 설비 안전 관리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 방호벽과 안전장치(개방 시 설비가동 중단 및 인터록 작동 등)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7 위생 및 주거 시설 제공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식당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온수, 난방 및 환기 시설, 비상탈출구, 개인물품 보관함, 합리적 크기의 개인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8 안전보건 교육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은 관계 법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제보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3. 환경

협력회사는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 사항을 취득하고,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유해물질, 폐기물, 폐수,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등과 관련된 법규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3.1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보고

사업 운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여 유지, 관리하며 법규의 최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2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협력회사는 생산·유지·보수 등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오염원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 최종 납품을 위한 포장과정에서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생산 프로세스 및 시설 개선, 원료 대체, 재사용/재활용 등을 통하여 물, 화석연료, 광물 및 원시림 등의 천연자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3 환경안전 계획

협력회사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과 수질 오염원,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를 포함한 당해 년도 환경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1. 환경안전방침 및 활동목표
2. 환경안전교육계획
3. 사고예방활동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3.4 환경안전 규정

협력회사는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자체관리규정(또는 절차)를 만들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3.5 유해 물질 관리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표기(라벨링)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3.6 고형 폐기물

협력회사는 고형 폐기물(비유해성)을 식별, 관리 및 저감해야 하고, 책임감있게 폐기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3.7 대기 배출

공정상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및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및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현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3.8 제품 함유 물질 규제

제조 공정상 특정 물질 사용 제한, 물질 재활용, 폐기 관련 정보 표기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 LG화학 친환경 공급망 관리 규정,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9 수자원 관리

수자원 사용과 배출을 유형별로 모니터링하고 문서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염 배출 경로를 통제하는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폐수는 배출 또는 폐기 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수 처리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10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전사 차원의 절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와 Scope1,2 및 3 범주의 온실 가스 배출을 추적하고 문서화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생산 시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LG화학과의 협조하여야 합니다.

3.11 기타 환경 관리

협력회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토양 오염, 해양 오염, 산림 파괴, 부지 경계선 소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주민을 포함한 공동체 생활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원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12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LG화학의 요청에 따라 생산, 제품, 운송과 관련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하고, 해당 평가를 뒷받침하는 환경영향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책임 있는 광물 구매

협력회사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가이드(이하, "OECD 실사가이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실사 기준에 맞춰 제조 공정상 사용되는 "관련 광물(별첨 1에서 정의)"에 대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4.1 비윤리적인 광물 사용 금지

심각한 인권 유린,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 수자원 고갈, 폐기물, 오염 등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관련 광물"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4.2 상위 공급망 협력회사 관리

LG화학이 승인한 협력회사에서만 "관련 광물"을 구매하고, LG화학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위 공급망(Upstream supply chain) 내 협력회사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LG화학에 공급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하는 신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LG화학이 해당 협력회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LG화학에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4.3 광물 공급망 평가 및 관리

또한, "관련 광물"의 채굴, 가공 과정에 존재하는 공급망 위험을 식별, 완화, 해결하여야 합니다. [별첨 1]에서 정의한 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으로부터의 "관련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처에 대한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OECD 실사가이드를 포함한 모든 적용 법률 및 국제 산업 기준에 따라 (별첨 1에서 상세 기술한 바에 따름) 실사(Due Diligence)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권, 환경, 건강 및 안전에 관해 LG화학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른 LG화학의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OECD 실사가이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제련소 또는 정제소에서 처리된 "관련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광물"을 공급하는 하위 협력회사가 OECD 가이드와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LG화학의 요구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OECD 실사가이드 및 LG화학의 보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한 실사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4 광물 구매에 대한 책임

본 행동규범의 '책임 있는 광물 구매' 항목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LG화학의 모든 직, 간접 손해를 배상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장래 유사한 위반 사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조치에는 대체 수급 결정 또는 광물 교체가 포함됩니다.



5. 준법 및 윤리경영

협력회사는 모든 거래 관계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부당취득,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비리를 엄격히 금지하며, 반부패, 자금세탁 방지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비밀 유지를 보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비밀정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5.1 정도경영 실천, 법령 준수

LG화학의 정도경영 방침에 동참하여, 협력회사는 뇌물 등 부적절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얻기 위한 행위를 약속, 제안, 승인, 수락하여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권을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제3자를 통해)으로 금품 등 수수를 약속, 제안, 승인, 제공하거나, 이를 수락하여서도 안됩니다.

협력회사는 LG 그룹의 회사 뿐만 아니라 제3자와 거래시에도 정도경영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반부패, 자금세탁 방지 관련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패 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 제재하고 조직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2 정보 공개, 문서화

모든 업무 및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여야 하며, 이를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동, 인권, 안전보건, 환경 관리, 경영활동, 재무현황 및 성과 등 정보를 관련 법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식별된 모든 위험과 그 위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문서화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록 위조 및 허위 작성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며, 회계의 투명성을 보증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체계를 수립, 관리하여야 합니다.

5.3 제보자 보호 및 보복 금지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 및 익명성 보장 등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보절차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5.4 지식재산권 보호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은 해당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LG 화학, LG 화학의 고객 및 하위 협력회사의 지식재산권은 안전하게 관리, 보호되어야 합니다.

5.5 비밀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LG화학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영업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 비밀정보 및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이를 통칭하여 '비밀정보'라고 함)를 비밀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적 용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5.6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고객, 소비자, 임직원, 다른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협력회사는 환경, 안전보건, 노동/인권 및 윤리 관련 법규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하여야 합니다.

6.1 준수 의지 표명

협력회사는 인권, 안전 환경 및 윤리 규범에 관한 준수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정책 성명서를 전 사업장에 현지어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6.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시스템 운영 및 관련 활동에 대표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고위 경영진은 회사 경영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6.3 법규 및 고객 요구 사항 대응

본 규범을 포함한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6.4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환경, 안전보건, 준법, 노동, 인권 및 윤리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통제, 관리하여야 합니다.

6.5 개선 목표 수립

사회적, 환경적 성과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및 실행 계획을 문서화하고, 성과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6.6 교육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이행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7 의사소통

정책 및 성과에 대해 직원, 협력회사 및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6.8 임직원 소통·제보 창구

본 규범의 내용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통·제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6.9 감사 및 평가

협력회사는 법규, 본 규범의 내용 및 고객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6.10 개선 조치

대내외 평가 및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적시에 시정하여야 하며, 본 규범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LG화학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11 문서화 및 기록

협력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제와 LG 화학의 비밀 유지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문서와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6.12 공급망 책임

본 규범의 내용을 LG화학과 관련 있는 공급망 내 협력회사에 전달하고 그 협력회사가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LG화학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당사는 'LG화학 협력사 행동규범' (이하, '본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숙지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LG화학과의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LG화학과의 거래하는 협력사로서 본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LG화학이 당사에 서면 통지를 하여 시정 요구,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2. LG화학 또는 LG화학이 지정한 자가 당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설문 또는 현장 방문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영업활동,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가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LG화학의 요청에 협조하고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는 LG화학과의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을 위해 LG화학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관련 시설, 자료, 인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위반을 즉시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당사의 하청업체 또는 공급상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도 이들에게 동일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3. 당사는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4. 당사는 본 행동규범이 LG화학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공급계약과 본 행동규범 간 불일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행동규범이 우선함을 확인합니다.

5. 당사는 모든 확인된 리스크와 이에 대해 취한 후속 조치에 대한 문서와 기록을 LG화학이 요청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본 행동규범의 위반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LG화학에 이를 통지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LG화학 귀중



별첨 1 : 실사 정책

1. 실사 대상

관련 광물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분쟁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하는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흑연 및 기타 LG화학 고객의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광물 또는 원재료
분쟁 지역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고위험 지역	환경 피해, 건강, 안전상의 위험이 있거나 정치 불안정 또는 탄압, 취약한 보호 시설, 치안 불안정, 시민 기반 시설의 붕괴 및 광범위한 폭력 위험이 있는 지역

2. 실사 기준

-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가이드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 모든 관련 법률 및 국제 산업 규범
- 실사 및 평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LG화학의 요구조건

[관련 광물을 위한 OECD 실사가이드 – 5단계 프레임]

번호	단계	내용
1	강력한회사 경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실사 정책 및 시스템 구축 (OECD 실사가이드 Annex II 및 EU배터리규제 Anne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식별 - 리스크 예방 및 완화 - 공급망 실사에 대한 제3자의 검증 또는 검사(audit) - 관련 리스크 보고를 위한 장치 • 향상된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에 기하여 OECD 실사가이드 및 본 행동규범과 일관된 실사 정책의 수립, 그와 관련된 정보 완전성(integrity)을 기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 작업 수행 • 협력사 포함 이해관계자에 실사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를 전달 (계약서 내 관련 조항 포함) • 공급망 이력관리
2	공급망 내 리스크 식별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리스크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어도 1년 1회 또는 LG화학 요청 시 추가로 실시 - 공급망 매핑(mapping)은 관련 광물과 연관된 하청업체와 공급상에 관한 식별 및 위치 정보, 관련 광물의 모든 원산지 국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OECD 실사가이드 Annex II 및 EU배터리규제 Annex X에 근거한 협력사 리스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화학 및 기타 정보원이 확인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진 리스크의 검토 및 조사 - LG화학이 요청하는 리스크 매핑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3	식별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이행 및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단계에서 확인된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평가들 간의 보고 격차 해소 - 해당 공급망 주체들에게 예방, 완화 및 해결 조치를 취할 것을 직, 간접적으로 요청 - 필요한 공급망/리스크 매핑과 리스크 해소 및 검증 또는 검사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 공급망 주체와의 거래 관계 종료 • 리스크 평가 결과 및 관리 계획에 대해 고위 경영진(임원급)에게 보고
4	공급망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실사가이드에 근거한 실사 실시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검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리스크에 대한 제3자 검증 또는 검사에 참여 - 리스크 관리 개선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 확인된 검증 또는 검사의 격차에 대비하고 개선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 - LG화학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3자 검증 및 검사와 관련된 사항 개선

5	공급망 실사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결과 공개(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업보고서 등) • 광물 공급망 전반으로부터 보고를 취합하기 위해 공급망 매핑 정보를 LG화학 또는 공인된 제3자에 제공 • 기존 제공한 정보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나 신규 정보 보고
---	-----------------	--

별첨 2 : 'LG화학 협력사 행동규범' 참조 자료

다음 기준은 본 규범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추가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RBA Code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code-of-conduct/>

IL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

ISO 14001

www.iso.org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ww.oecd.org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http://www.oecd.org/investment/mne/mining.htm>

SA8000 and SAI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http://www.sa-intl.org/>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ww.unglobalcompact.org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ww.un.org/Overview/rights.html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https://www.undp.org/laopdr/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and-human-rights>

European Battery Regulation – Annex 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20PC0798>



개정 이력

Version	1.0	2016년	최초 제정
	1.1	2020년 4월	일부 개정
	2.0	2023년 3월	일부 개정
	2.1	2025년 1월	일부 개정